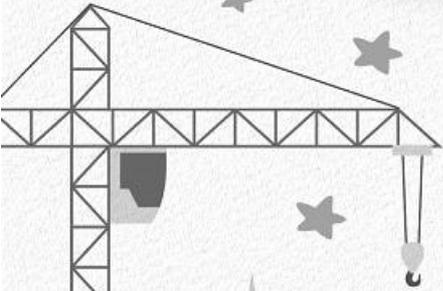


도시 재건축 재개발과 길고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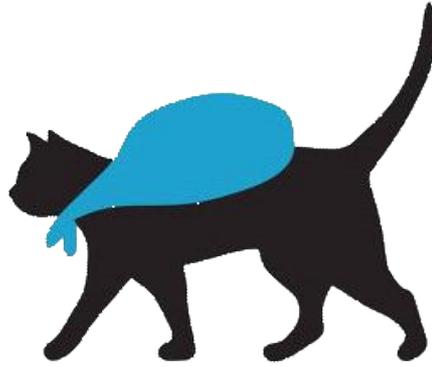


2018년 9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도시 재건축 재개발과 길고양이



2018년 9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둔촌냥이 *

- 이사가는 둔촌고양이 프로젝트 진행 팀
- 다음 스토리펀딩 연재(<https://storyfunding.kakao.com/project/17821>)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길고양이 구조 및 입양, 이주 진행
- 재건축을 앞둔 둔촌 주공아파트의 고양이들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동네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많은 분들과 봉우곰스튜디오의 김포도 작가, 활동가 정미진,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프로젝트의 이인규가 함께 합니다.

 : dunchoncat@naver.com    : @dunchoncat

인사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 제

- ▶ 재건축, 재개발과정에서의 동물보호 그 필요성과 한계 / 1
전진경 카라 이사
- ▶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이사가는 둔촌 고양이' / 9
이인규 둔촌냥이
- ▶ 아현동 재건축지역 동네고양이 보호 사례 / 15
김경희 자원활동가
- ▶ 재건축·재개발지역 길고양이 지원의 과제와 방안 / 23
이종찬 연구자

토 론

* 토 론 좌 장

천명선 서울대 수의과 교수

* 토 론 자

이현주 과천시 캣맘

조윤주 서정대 애완동물과 교수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김문선 서울시 동물정책팀장

최재민 강동구 동물복지팀장

신소윤 한겨레 기자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 정 애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길고양이를 위해 현장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이 자리에 기대와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동물권행동 카라’와 ‘둔촌냥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귀한 시간을 내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각계 전문가 분들과 정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건축·재개발 이슈는 집값 상승, 젠트리피케이션 등 인간사에 끼치는 영향만큼이나 해당 지역의 생명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원래부터 지역에 살고 있거나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되어 비어버린 공간에 자리를 잡은 길고양이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서식처를 잃고 현장에서 숨어 지내다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길고양이를 돌보는 지역주민들이 구조나 입양을 하거나 밥자리를 옮기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길고양이를 서서히 그 외부로 이주시키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만도 잠원동, 개포동, 아현동, 둔촌동 등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개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에 맡기기엔 여러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자의 협조 없이는 출입이나 길고양이를 위한 기타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들마저 취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단순히 개개인의 선의와 애호의 관점에서 바라볼 일이 아닌 공공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둔촌지역은 그 규모와 지역 주민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언론과 공공이 '길고양이 이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재건축·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만큼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둔촌을 비롯한 기존 사례를 분석하고 어떤 준비와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무엇보다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촉발되고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현장에서 흘리시는 땀만큼 저도 길고양이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동물보호 그 필요성과 한계

KaRa
(사) 동물권행동 카라

2019.9.19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 전진경



KaRa
(사) 동물권행동 카라

목차

- 01 / 고양이의 생태와 특성
- 02 / 길고양이 복지 주요 현안과 대응
- 03 / 재개발과 길고양이 복지
- 04 / 재난의 시대, 떠나지 못하는 생명들
- 05 / 방법론 : 축소/ 이주/ 구조
- 06 / 사례와 한계
- 07 / 우리가 꿈꾸는 세상

1 | 고양이의 생태와 특성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생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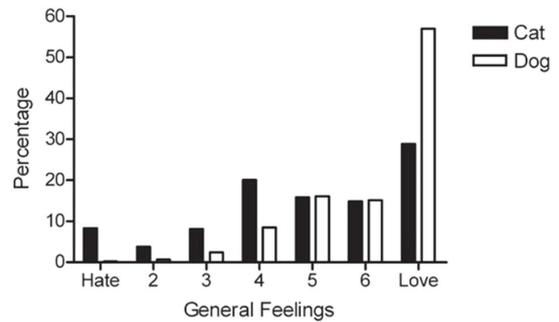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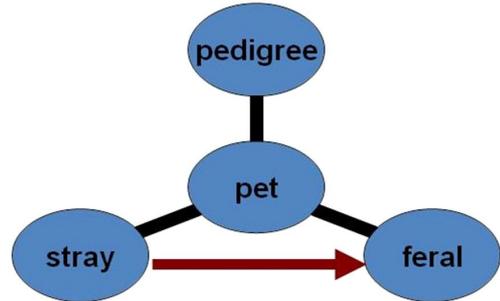
- 반 수생 동물, 설치류 포식하는 specialist
- 먹이 및 암컷 분포에 따라 유연한 영역 분포
- 각인기(sensitive period)를 가지는 동물
- 2~8주 사람과의 긍정적 접촉 여부에 따라 평생의 성격결정
- 고양이에 대한 일반적 감정은 혐오부터 사랑까지 다양

<결과>

- 전국 길고양이 수 200만 마리 추정
- 미국 feral cat 6,000만~ 1억 마리 추산
- '워싱턴 DC, 2021년까지 모든 길고양이 수 파악한다'
- 서울 TNR 10년 -> 개체수 절반(약 15만)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한 생태적 지위 (예)

- 도시 -> 설치류 개체수 조절자, 발정 소음 등 생활민원 유발자
- 도시근교 -> 반 독립 야생고양이, 비닐하우스, 닭 등 피해 유발
- 자연환경 보전지역 -> 독립 야생고양이, 야생동물과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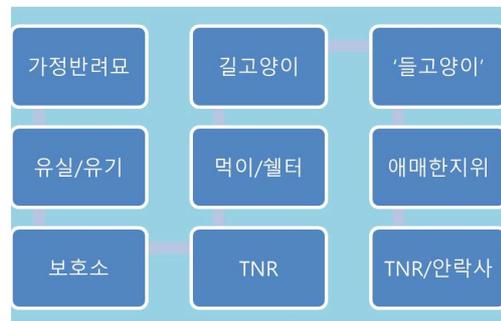


1 | 고양이의 생태와 특성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인간의 2대 반려동물 고양이, 개와 다른 생태, 문화적 지위, 법적 보호

- '산으로 간 유기견' VS '산으로 간 고양이'
- 야생화된 동물 VS 인간의 반려동물
- 동물보호법 : '자생하는 고양이의 중성화 명문화'
- 야생생물 보호법 : 야생화된 '애완'동물의 포획등 '적절한 조치' 언급



2 | 길고양이의 복지현황과 대응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한국 도시 고양이들이 처한 최악의 열악한 삶의 조건 :

- 개체수 증가로 먹이 영역 경쟁 및 감염성 질환의 발병
- 혐오민원과 직접적인 학대
- 고양이에 대한 비과학적 미신과 편견
- 발정 동기화로 인한 잦은 출산과 버려지는 새끼, 어미의 고통
- "나만 고양이 없어", 준비 없이 맞은 '고양이 키우기 붐'
- 도시화로 인한 은신처의 절대 부족과 배변 스트레스
- 낮은 중성화 비율과 높은 유실 유기로 새로운 개체군 유입

⊕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위기

- 개체군 전체에 닥치는 위기
- 대규모 해법과 자원의 투입이 요구됨
- 극히 초보적인 사회적 합의 수준



2 | 길고양이의 복지현안과 대응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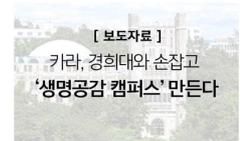
- TNR의 국비 일부 보조
- 길고양이 TNR 훈령 배포와 동물보호 민원 일부 수용
-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주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호 기제>

- TNR의 시행
- 동물 등록 및 위탁, 직영 형태로의 유기동물 보호
- 서울시, 부천시 등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 서울시, 일부 위기동물의 인수 및 입양 지원 시작 -상암반려동물지원센터

<시민과 동물보호단체·동물권행동 카라 활동 중심>

- 길고양이 인식 개선과 TNR 확산을 위한 대학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사업 TNR 지원 및 공원급식소 사업
- 동물권행동 카라의 시민 구조 치료지원의 대다수가 길고양이에 집중(길고양이나 유기묘의 사고 또는 질병 치료)- 연예산 1억 2천 만가량
- 개인구조 고양이의 입양 홍보 지원 요청 폭증
- 고양이 애니멀호스팅으로 인한 학대 대응
-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의 영역 이동 활동 및 구조 입양 활동 자문 및 관계자 협의의 도움 등 초보적인 지원 제공



카라 · 2018-06-09 · 0 666

길 위의 유기묘들, 결과는 어땠을까

밖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키우는 고양이도 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착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반려묘는 길고양이가 될 수 없습니다. 유기묘·하루와 유기묘·타라 이야기를 통해 길 위의 유기묘를 현실을 점검해 봅시다.

3 | 재개발, 재건축과 길고양이 복지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마포구 아현동



송파구 마천동

〈재건축〉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재건축 조합 결성
- 주공 아파트 등 초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시기 집단적 도래
- 용적률이 낮고 녹지 면적 넓으며, 지하실 접근성 등 길고양이 서식에 적합
- 노후 아파트 전선 등 설치류에 의한 사고나 위험을 방지해 주는 역할 수행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도시 생태계 일원으로서 길고양이의 역할 존재(CF, 뉴욕시의 쥐떼 출몰 문제)
- 규모가 거대하고 사업이 다양하여 길고양이 문제 대처가 재건축보다는 용이
- 길고양이의 점진적인 서식지 이전 등이 재건축보다는 유리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지역 2,000여 곳 이상 - 전국이 공사장〉

개인주택 상가 중심지역의 재개발지역:

- 은평뉴타운, 서울 신길동, 인천 십경동, 백사마을, 아현동 잠원동 서울 송파 마천동 등

대규모 도심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 기 진행 - 가락주공아파트
- 진행 중 - 둔촌 주공아파트, 개포주공아파트(2, 3단지)

3 | 재개발, 재건축과 길고양이 복지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재건축 - 길고양이들에게 닥쳐오는 자연재해 수준의 재난〉

- ✓ 고양이는 관찰을 통해 점진적 학습 →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취약
- ✓ 스트레스를 은신처에 숨어 극복하는 중 특성을 가짐
- ✓ 영역 축소로 인해 개체 밀도 증가할 경우 발정동기화 발생→원치 않는 생명 탄생
- ✓ 대부분의 재건축이 주요 도시 도로 접경 지역의(개발가차)→ 로드킬
- ✓ 재건축 아파트 길고양이 거주 환경은 지하실, 녹지 등 존재로 타 지역보다 월등
- ✓ 스트레스에 취약한 예민한 동물로서 질병 발생 우려
- ✓ 확산해 나간 지역 길고양이 개체군에 악영향 및 지역 주민 민원 유발 가능성



▪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 복지 프로젝트의 스테이크 홀더와 주요 역할

- 관할 광역자치단체도시→ TNR 및 동물보호원칙 재확인, 관할 자치단체 협력 증대
- 기초자치단체 → 길고양이 구조 및 TNR 지원, 건설가 및 조합과 협의
- 재건축 조합 → 재건축 일정, TNR 포획과 영역 이동 활동 인정 및 지원 "조합원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 임을 인식시킴
- 자원봉사자 → 길고양이 TNR 실행 및 이주 및 구조 활동, 이주 후 보살핌
- 건설사 →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재건축의 원칙 수립 및 이행, 영역 이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
- 동물보호단체 → 이주 방법 안내 및 활동 과정에서의 자문, 가능한 자원의 지원과 구조 활동 지원, 동물 학대 예방활동



4 | 재난의 시대, 떠나지 못하는 생명들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법적 제도적 문제>

- 동물유기 행위 사전 제도 등 적극적 제어 없음
- TNR 이외 재건축지역 길고양이 보호 지원 근거 없음
- TNR 홍보 및 지원 부족으로 선대응적 TNR 지원 못함

<동물과의 유대와 정서적 가치 훼손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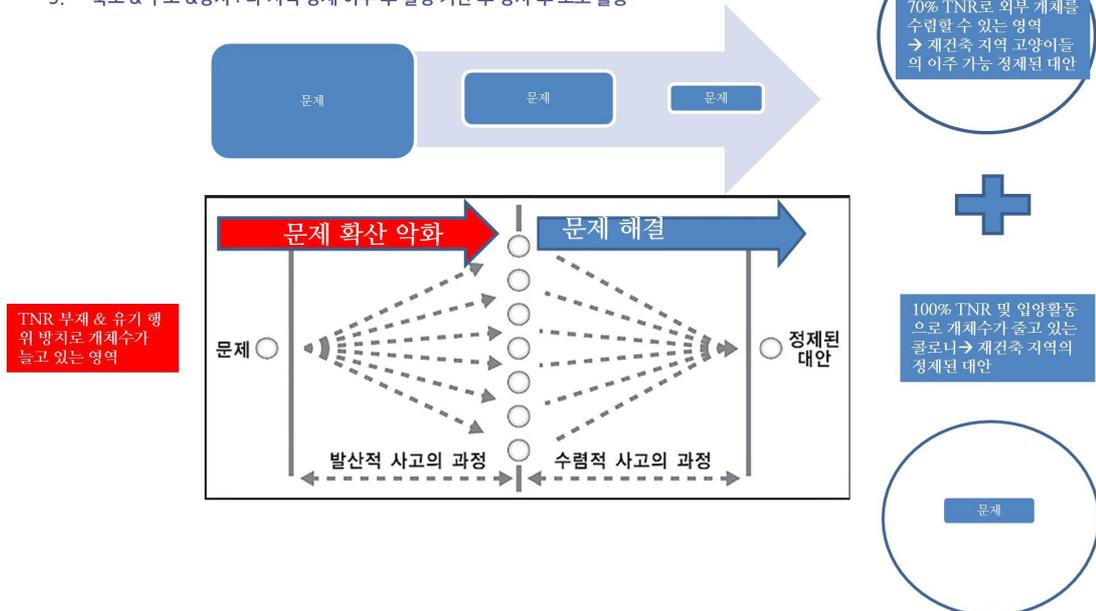
- 고양이들은 케어테이커와 개별성을 가진 존재
 - 재난에 처한 동물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과 책임감
 - 사회적으로 활동의 가치를 이해 받지 못하는 부당함
 - 문제 유발자 따로 해결하려는 자 따로, 해결하려는 자의 고통과 부담
- <고양이와 동물들의 복지>

- 대형 재난 수준의 급격한 변화 수용 적응하는데 한계
 - 지역 문제가 타 지역까지 길고양이나 동물들에게까지 확대됨
- 사고나 확대 등 예방 활동으로서의 선대응 영역 이주 지원 인프라 전무
생존을 위해 인간의 결을 떠난(떠날 수 밖에 없는) 고양이는 생태계에 부담 유발
지역을 바꿔 다시 길고양이 문제의 악순환의 시발점으로 작용



5 | 방법론 : 축소/ 이주/ 구조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1. 축소 & 이주 : 고양이들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특성 이용한 근거리 이주 방안
2. 축소 & 구조 : 적합한 이주가 불가능 할 경우 특단의 빈 공간 자원을 할애하여 강제 이주, 구조 후 영구 보호
3. 축소 & 구조 & 방사 : 타 지역 강제 이주 후 일정 기간 후 방사 후 보호 활동



6 | 사례와 한계



6 | 사례와 한계- 전략수립



6 | 사례와 한계 - 실행과 난관 봉착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현황조사



원칙수립,구조개시

발견된 고양이수

총 20마리
(TNR 10마리, 50%)

밥그릇 존재

총 20곳
(사료 2곳, 10%)

쉼터 흔적

총 8곳
(이불 3곳, 37.5%)

특이점

구내염 고양이 여럿 발견
어타 지역보다 중성화율
높음



질병치료, TNR, 쉼터지원개시



개포 2단지 생명의 절규



재건축 조합 도움으로 건설사 협조 구함



로드킬된 어미 고양이와 가족의 비극



개포 2단지 생명의 절규



곧 무너질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는 생명들



강남구청의 최악의 행정폭거



개포 2단지 생명의 절규

6 | 사례와 한계 - 2차 이주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6 | 사례와 한계 - 2차 이주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만성 구내염 개체의 구조와 영구 보호



입양 가능 개체의 순화와 입양활동

현황조사



급성 질병 발생 개체의 구조와 치료



살고 싶어 2단지에서 넘어 온 '호식이' 질병 치료 후 보호 중

7 | 우리가 꿈꾸는 세상

KaRa
(사) 동물권행동카라



아픈 동물의 고통이 외면받지 않기를,
 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없기를,
 변화를 일구는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해 주기를,
 동물도 행복함을 느끼는 생명체임을 인지하기를,
 힘을 가졌을 때 자비롭게 쓰기를,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좋아하는 장소와 고향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누군가 노력하면 도와주기를,
 재산과 사람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를,
 쓰레기더미 속에서도 생명은 빛나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귀찮아미와 완장이, 풍치...사라진 아이들이 생명의 땅을 찾았기를...

감사합니다!

2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이사는 둔촌 고양이'

이 인 규

둔촌냥이

ikle29@naver.com

지난 2017년 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앞두고 단지 안에 남게 될 고양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다른 지역에서도 고양이들을 이주시킨 사례가 있다고 하니 우리도 걱정으로만 끝내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며 뜻을 모았다. 일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있었던 너무 많은 우여곡절은 아마 이 글에서 다 담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아직 고양이들의 이주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에 선부른 평가는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둔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절반의 성공

주민들의 이주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둔촌주공아파트의 고양이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모인 모임인 '둔촌냥이'가 결성되었다. 본격적인 아파트 철거까지는 아직 1년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 거대한 아파트에 수많은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한 마음에 다들 마음이 급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장기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부터 진행하였다. 그동안 고양이를 돌본 고양이 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모르던 분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고양이 개체 파악하기 위해 단지를 누비며 사진을 찍었다.

고양이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세미나를 열어 각계의 경험과 지식을 모으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지역 사례를 듣고 나니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일의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다. 고양이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고양이를 돌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자체, 동물단체, 재건축 조합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앞으로 진행할 일에 대해 공유하고 받을 수 있는 도움을 확인하였으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른 재건축 지역에서 관계기관과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은 것과는 달리, 다행히 둔촌의 경우 대부분 우호적이고 협조적으로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필요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카카오 스토리 펀딩'을 통해 '이사가는 둔촌 고양이'를 알리고 프로젝트에 관한 글을 연재하여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고, 적지 않은 금액의 펀딩 모금에 성공할 수 있었다.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7821>)

본격적인 고양이 이주는 세미나를 통해 정리한 '고양이를 이주 시키는 세가지 방법'에 따라 1) 입양, 2) 근거리 이주 (고양이들의 밥자리 이동을 통한 자발적 이동), 3) 원거리 이주 (별도의 공간에 계류장을 마련하여 계류 방사하는 방법)로 나눠서 생각하였고, 세 가지 방법 모두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가장 먼저 입양 보내야 할 고양이들을 구조하여 임시보호하고 순화하였으며, 자발적으로 꾸려진 '입양홍보팀'과 동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의 도움으로 적극적인 입양 홍보를 진행하였다. 임시보호는 고양이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돌보고 순화시키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근거리/원거리 이주 과정에 필요했던 여러 지난한 협의와 갈등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입양은 평화롭게 잘 진행된 편이다.

근거리 이주는 대부분의 고양이 활동가들이 처음에는 고양이들이 영역 동물이라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2차선 도로를 건너 둔촌2동으로 이동하는 것의 위험을 지적하여 근거리 이주를 꺼리는 상황이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예로 들며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하였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근거리 이주의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체적인 협의를 이루어졌어야 하는 시점에 갑자기 등장한 (사)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의 '고양이 마을'로의 원거리 이주 제안에 모든 캣맘의 마음이 기울어졌었고, 그들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 근거리 이주의 시작 자체가 늦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재건축 진행 과정도 펜스 설치가 생각보다 늦어져서 시간을 벌 수 있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대책 없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이후에는 고양이 활동가와의 갈등으로 우리의 초기 계획대로는 근거리 이주를 끝까지 진행할 수 없었으며, 이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에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수의 고양이들이 펜스까지 와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급식소가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약한 개체들은 조금 떨어진 곳까지 밀리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개체

의 추가적인 위치 파악과 그에 따른 급식소 위치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거리 이주는 계류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미션이었다. 뻘뻘한 도시에서 계류장이라는 낯선 시설을 설치해 놓을 공간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행운'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막막한 일이었다. 강동구청과 관 내 교육기관에서 도움을 주셔서 다행히 두 곳의 실외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서 스틸로 제작된 2m X 4m가량의 계류장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다른 측 고양이 활동가들이 갑작스레 일방적으로 통보한 변경된 근거리 이주 계획은 너무 특정 지역으로만 고양이들을 몰게 되면 너무 위험하다는 동물단체의 지적에 따라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고양이 중 일부를 원거리 이주로 계획을 전환하였고, 급하게 계류장을 하나 더 구해야 했다. 열심히 발로 뚫던 덕분에 다행히 방사 후 정착하기 좋은 환경 한 가운데에 놓인 반지하 실내 공간을 구할 수 있었다.

계류장의 위치를 강동구 내로 구한 것은 우선 사람들의 거주지역과 가까워야 꾸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고양이들이 방사되었을 때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강동구만큼 되어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TNR이 되어 있는 비율을 고려하여 계류장의 위치를 잡았고, 길고양이 급식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발로 뛰며 앞으로도 고양이들이 강동구의 동물복지사업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원거리 이주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계류장이 마련되었음에도 다른 측 활동가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해야 하는 고양이들을 구조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고양이를 돌보던 캣맘이 접치는 경우나 하나의 무리를 두 사람이 돌본 경우 등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고양이의 구조에 제동이 걸리는 점은 난감한 부분이었다. 결국 고양이들을 위험한 단지 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며, 계속 함께 살아갈 '고양이들 간의 관계'를 더욱 우선시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구조할 고양이를 선정하였다.

2. 절반의 실패

처음 예상과는 달리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고양이를 살리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간의 갈등이었다. '고양이들이 어디로, 어떻게 이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한 생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고양이들의 이주 방법은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진행할 수 있는가?'라는 주도권에 대한 갈등이 더 컸던 것 같다. 스토리펀딩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갈등은 증폭되었고, 펀딩 목표 예산을 산정하던 시점에 반영되지 않은 '청주 이주'에 필요한 비용은 마련되는 기금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에 '고

양이로 장사하려는 외부인' 프레임으로 더 많은 공격을 받았다. 캣맘들의 모임이 내부 갈등으로 갈라져서 그 안에서 함께하던 캣맘분들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진정한 캣맘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같은 프레임으로 비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격렬해지면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과 동물단체에서도 이러한 심한 갈등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도울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구청은 매일 같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했지만, 단지 전체를 돕지는 못했다. 우리는 절반은 실패한 것이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갈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없었다면 이런 갈등 없이 잘 되었을까?', '우리가 없었다면, 어쩌면 지자체와 동물단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일을 하고도, 많은 고양이를 구조하고도 '우리가 없었다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을 마주하면 자괴감에 빠지곤 한다.

'왜 이런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결론은 '결국 고양이들을 살리고 싶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아파트의 스케일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양이를 이주시킨다는 일의 특성상 절대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단지 안의 모든 고양이를 구조할 수가 없다. 겹겹의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혼자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마음만으로는 너무 많은 빈틈이 생긴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도권을 모두 내어드리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비어있는 틈을 계속 메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고양이 활동가 간의 갈등은 비단 둔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소위 '고양이 판'이라고 불리는 이 세계는 고양이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 고양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이 모여있고, 오랫동안 쌓인 많은 갈등 관계들이 뒤얽혀 있다. 이 판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문제 상황들을 겪었던 경험 때문인지 일단 사람을 만나면 누구 편(?)인지, 무슨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일에 접근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린 듯하다.

이처럼 수많은 갈등 가능성을 이미 내재하고 사람들이 만나 같이 일을 진행하는 경우, 결국 상처만 남기고 사분오열되고 마는 경우가 드물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현장의 활동가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중재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이제는 적지 않은 사례들이 모였으니 각각의 사례에서 발생했던 많은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다 함께 논의하여 갈등 상황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준'을 마련해둬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과연 이러한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민간'의 영역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고양이들이 알아서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

에 이러한 활동이 필요 업을 수 있다. 하지만 둔촌주공아파트는 둔촌1동이라는 행정동 전체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의 공간이고, 그 안에는 수백 마리의 고양이들이 살고 있었다. 이러한 스케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민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특히 고양이들을 근거리로 이주 시킬 지역의 환경을 준비하고 원거리로 이주시킬 지역을 확보하고 계류장을 설치하는 일은 민간의 힘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나마 둔촌은 근거리 이주가 가능한 환경이어서 상황이 괜찮은 편이었으나 만약 4면이 모두 다차선 도로로 둘러싸인 단지의 경우, 과연 민간의 힘만으로 고양이들을 안전하게 이주시킬 수 있을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가족이 돌봄을 책임지지만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구조에 나서고, 재난을 일으킨 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재건축이라는 '인재'도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바라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

3.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둔촌주공아파트에서 긴 시간 쌓여온 사람들의 갈등과 감정의 골은 안타깝게도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끝내 버리고 싶지 않은 희망은 이곳에 남은 모두가 '고양이를 위한다는 마음'은 같으리라는 것이다. 아직 단지 안에는 고양이들이 남아 있고, 원거리 이주도 고양이들이 완전히 안착하기 전이다. 고양이들의 이주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며, 이주 후에도 돌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사실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한 둔촌주공아파트 현장에는 공사장 펜스가 모두 쳐지고 통제가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공사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민간인의 영역을 넘어선다. 동물단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둔촌냥이 활동을 하면서 다른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께 많은 연락을 받았다. 아마도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양이를 걱정하며 소리소문없이 많은 고생을 감내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은 결코 우리만의 일이 아니며 앞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진행하며 배운 많은 것 중 다른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지역의 경험이 모이면 적어도 '재난 시 대처 방안' 같은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매뉴얼이라도 손에 쥐고 격한 파도 속으로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민간의 영역 바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과 고양이를 함께 구조할 수 있는 배와 그물, 튜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3

아현동 재건축지역 동네고양이 보호 사례

김 경 희

자원활동가

kkh126@gmail.com

I.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동네고양이

1.1. 아현 2구역 재건축 지역 현황 및 개요

아현 2구역 재건축 지역은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아현뉴타운의 정비 구역 중 한 곳이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사이 대로변에 인접한 지역으로 향후 1400여 세대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6년 6월 재건축 시행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되었고, 이 지역 거주자는 2016년 12월까지 이주를 완료하라는 통지가 있었다.

2018년 8월 현재는 60여 가구가 남아 조합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1.2. 동네고양이 이주 및 보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2016년에 이주 명령을 받고 이사하기 전까지 아현 2구역에서 세입자로 거주했다. 남몰래, 혹은 공공연히 동네고양이를 돌보던 주민들이 걱정을 뒤로 하고 동네를 떠나야 했다. 한 동네에 사는 지인이 먼저 이사 가면서 집 앞 동네고양이들에게 주던 사료를 전달했다. 받은 사료를 다 주고 난 뒤에는 사료를 구입해서 주었다. 이사를 앞두고, 밥터를 차지하고 지내던 고양이 가족 중 새끼 한 마리가 시체로 발견되고 다른 가족들이 사라졌다. 남아있던 새끼 고양이를 입양보냈다. 집주인의 재촉을 받으며 11월에 아현동에서 성산동으로 이사했다.

이사한 후 두 달 가량 아현동을 찾지 않았는데 다음 해 1월 맹추위에 아현동 고양이들이 걱정되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아현동에 방문해서 몇 자리에 밥을 주었다. 이후에 알게 되었지만 나 말고도 몇 분이 이사를 간 뒤에도 일주일에 2회 아현동에 찾아와서 고양이를 보살폈다. 2월 말에는 온라인을 통해 함께 밥을 줄 사람을 구했다. 나를 포함해 네 사람과 함께 하게 되었다. 아현 2구역 내에 밥자리를 15군데 정도 정했다. 나 이외에는 모두 아현 2구역 방문이 처음이었다. 각자 주 1회 아현동에 왔고, 사료와 물도 각자 준비했다. 온라인 채팅공간에서 소통했다.



II. 동네고양이 보호 활동

2.1. 활동의 개요

-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아현 2구역에서 거주하며 동네고양이에게 밥을 주었다.
- 이주 명령을 받고 재건축 지역에서 이사한 후, 2018년 1-2월 동안 주 2회 아현동에 방문해서 동네고양이에게 밥을 주었다. 2월에 온라인 카페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아현동 재건축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사람을 구했다.
-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그룹 형식으로 아현동 재건축 지역 내 동네고양이에게 급식을 하고 있다. 인원은 그동안 2~4명이었고 현재는 2명으로 줄어서 반자동 급식기를 여러 개 활용하고 있다.
- 밥자리는 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 15~20곳이었다. 철거가 진행되면서 동네 내부에 있는 밥자리 수를 줄였고, 철거지역 외곽에 밥자리를 마련했다.
- 2017년 10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마포구청,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그리고 자원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아현동 재건축 지역 집중 TNR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39마리를 중성화했고, 이 과정에서 3마리를 입양보냈다.
- 2017년 11월,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아, 마포구 캣돌보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주최했다. 급식소와 급식소 안내문을 제작해 나누었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해 온라인 카페와 채팅방을 열었다.
- 마포구 캣돌보미들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마포구 캣돌보미와 마포구청장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아현동 재건축지역의 동네고양이 보호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 마포구청 소식지, 마포FM에 마포구 내의 캣 돌보미의 활동이 소개되었다. 마포구의 2018년 동네고양이 돌봄을 위한 예산이 두 배 가량 늘었다.
- 2018년 3월부터 마포구청으로부터 급식소 2개와 매달 100kg 가량의 사료를 지원받게 되었다. 현재 아현동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 분이 집 앞에서 동네고양이에게 급식을 하고 있다. 이 분들과 사료를 나누고 있다.
- 2018년 3월 서울시에서 중성화수술 인력과 공간을 지원하는 지역구 TNR데이 행사를 마포구에서 주최할 수 있게 되었다.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지역 동네고양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선정되었다. 아현동에서 다시 한 번 집중적인 TNR이 이루어져서, 13마리 가량을 TNR할

수 있었다.

- 2018년 9월 현재, 아현 2구역은 지난 몇 달 동안 철거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현재 다시 속력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현동 고양이들은 잠시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지만 올 겨울에는 철거와 추위로 인해 이중고를 겪을 위기에 처해 있다.

- 2017년 11월,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아, 마포구 캣돌보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주최했다. 급식소와 급식소 안내문을 제작해 나누었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해 온라인 카페와 채팅방을 열었다.

- 마포구 캣돌보미들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마포구 캣돌보미와 마포구청장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아현동 재건축지역의 동네고양이 보호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 마포구청 소식지, 마포FM에 마포구 내의 캣 돌보미의 활동이 소개되었다. 마포구의 2018년 동네고양이 돌봄을 위한 예산이 두 배 가량 늘었다.

- 2018년 3월부터 마포구청으로부터 급식소 2개와 매달 100kg 가량의 사료를 지원받게 되었다. 현재 아현동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 분이 집 앞에서 동네고양이에게 급식을 하고 있다. 이 분들과 사료를 나누고 있다.

- 2018년 3월 서울시에서 중성화수술 인력과 공간을 지원하는 지역구 TNR데이 행사를 마포구에서 주최할 수 있게 되었다.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지역 동네고양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선정되었다. 아현동에서 다시 한번 집중적인 TNR이 이루어져서, 13마리 가량을 TNR할 수 있었다.

- 2018년 9월 현재, 아현 2구역은 지난 몇 달 동안 철거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현재 다시 속력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현동 고양이들은 잠시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지만 올 겨울에는 철거와 추위로 인해 이중고를 겪을 위기에 처해 있다.





<아현 재건축지역 집중 중성화 사업>



<마포구 동네고양이 돌보미 네트워크 행사>

2.2. 도움 받거나 함께한 사람들

1) 동물보호단체

‘아현동 재건축지역 집중 TNR 사업’ 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행사 홍보, 자원활동가 모집, 행사 준비 공간, 포획된 고양이 중 질병이 있는 고양이의 치료와 입양 가능성이 있는 고양이의 입양에 도움을 받았다. 나는 당시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약칭 우리동생)’에서 근무하는 상근 활동가였다. 이 사업이 비영리 단체인 ‘우리동생’의 미션에 적합해서, 업무 시간 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로부터 TNR에 필요한 장비 일체와, 집중 TNR 노하우를 가진 활동가 인력과 자원 활동가 모집을 지원했다.

2) 공공기관

‘아현동 재건축지역 집중 TNR 사업’에서 중성화 수술은 마포구 내 TNR 협력병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마포구의 동네고양이 중성화수술 예산으로 이루어졌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내 TNR 협력병원에 협조를 요청해, 집중적인 중성화수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구청 담당자가 방문해 난방기와 정수기, 간식 등을 지원했다.

‘서울시캣맘협의회’에서는 재건축지역 내 동네고양이 보호를 위해 마포구에서 ‘TNR데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울시의 동물 보호 예산으로 아현동 재건축지역과 주변 지역의 TNR 사업이 이루어졌다.

3) 재건축 조합

재건축 조합에서는 아현동 재건축지역에서 중성화 사업이 이루어진 6일 동안, 재건축 지역 내 공기를 쓸 수 있게 허락했다. 우리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에서 포획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양이를 임시 보호했다. 활동가들은 1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의 전력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재건축 지역 내 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해 별다른 간섭이 없어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4) 자원활동가와 캣돌보미 커뮤니티

재건축 지역 내 동네고양이 돌봄 활동은 처음부터 자원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시작했고, 지속되고 있다. 두 번의 TNR 사업에는 지역을 불문한 자원 활동가들의 협력이 있었다.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선의만으로 낯선 지역에 찾아와서 손을 보태주었다.

동물보호단체의 지원을 받았던 첫 번째 TNR사업의 경우, 전국의 대학 내 동네고양이 커뮤니티

니티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주었다. 서울시에서 지원한 두 번째 TNR 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마포구에서 자발적으로 동네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들의 자원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III. 결론

3.1. 활동 시 어려웠던 점

- 주민이 대부분 이주하고 난 재건축 지역이라 밥자리 만들기가 쉽고, 대낮에 급식을 하러 돌아다녀도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몇 차례 밥그릇이 없어졌고, 밥을 주지 말라고 의사 표시를 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 거주하는 지역에서 매일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보니, 고양이들의 건강 상태나 개체 수 파악이 어렵다.

3.2. 느낀 점/바라는 점

- 현재는 철거 단계이고, 일부만 철거되었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보금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철거에 속력이 붙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때 고양이들이 그 과정에서 희생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시공사측의 주의가 필요하다.
- 공공기관은 조합과 시공사 측에 동물 보호에 대한 주의와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 자원 활동가들이 개개인으로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할 경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 공공기관은 재건축 지역에 사료를 우선 지원하고 그 주변 지역의 집중적인 TNR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집중적인 TNR 사업의 경우 자원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공공기관이 단체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당시에 단체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로서, 주변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었다. 또 마포구의 담당자가 구조한 고양이들을 데려다 키울 만큼 동물 보호 의식이 높아서 우리의 활동에 협조적이었다. 그럼에도 단체와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고, 공익 차원의 활동임에도 자원 활동가들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과중한 노동을 책임져야 했다.

- 공사를 진행하는 측이나, 자원활동가들이 동물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과 사례가 필요하다. 활동을 시작할 즈음 재건축 지역 동물보호 활동 사례들을 열심히 찾고 조언을 구했지만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는 다소 무책임

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막했다. 사실 지금도 급식과 밥자리 이주 이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을지, 불의에 사고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막막하다.

- 우리의 경우, 동네고양이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대로변과 인접한 면도 있으나, 주변 주택가, 시장, 아파트 단지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동네고양이들이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에서 TNR과 먹이 급여 등 동네 고양이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동물 보호 의식이 높고,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 동네고양이 돌봄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 지역 내 자원 활동가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커뮤니티가 단단해져서 유사시에 도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일이 필요하다.

4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지원의 과제와 방안

이 종 찬

길고양이 연구자
 前서울연구원 연구원
 iflowave@gmail.com

I.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1.1. 길고양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직 전체적으로는 개를 기르는 가구가 많지만,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¹⁾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과거 부정적인 인식이 변화해 돌봄과 공존의 대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²⁾

길고양이는 정부의 분류로 보자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이 아닌 TNR의 대상이다,³⁾ 동시에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들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인 “유실·유기동물”로서 학대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이다.⁴⁾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이나 축산법에 따른 가축도 아니고 천연기념물이나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야생동물도 아니다. 길고양이는 도시에서 인간의 잉여자원에 어느 정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물로서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경계를 가로지르는 길고양이의 이런 특성이 때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수는 2012년 115만8천932마리에서 2015년 189만7천137마리로 약 63.7% 증가함.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17년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30.9%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그 중 개를 기르는 가구가 82.5%,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가 16.6%를 차지함, 그 외 소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4% 미만.

2) 길고양이가 돌고양이, 도둑고양이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고 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시문제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왔고 이런 사회적인 인식 역시 서서히 변화함(이종찬, “행위자-중성화 이론을 통해 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과 공존의 정치” 2016)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한편, 같은 고양이이지만 서식지에 따라 도시나 주택가가 아닌 곳에 사는 고양이는 돌고양이로서 돌고양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따라 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을 의미함.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면 포획될 수 있는 대상임.

4) 동물보호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들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사실상 야생에서도 대형식육목 동물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지금, 길고양이가 도시 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라는 측면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아끼는 행동이 어떤 맥락에선 다른 소동물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길고양이를 좋아하고 직접 돌보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뉴스에 보도되는 수많은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동물 보호를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소극적 의미의 보호와 생존 조건과 복지까지 고려하는 적극적 의미의 보호로 나누어 본다면, 사실 그동안의 정부의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과 기조는 주로 개체 수 억제와 소극적 의미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한강맨션 길고양이 사건을 계기로 2008년부터 TNR을 실시, 2017년엔 8,985마리를 시행했고 올해는 9,700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2013년 최대 25만 마리로 추산했던 길고양이 수는 2017년 13만9천 마리로 준 것으로 보고 있다.⁵⁾

최근 들어 TNR 이외에도 길고양이급식소나 길고양이화장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 의미의 보호와 공존을 위한 움직임도 시민들의 요구와 참여를 통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강동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광진구, 서초구, 은평구, 종로구 등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거나 시범운영 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숲과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여의도공원, 보라매공원,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을 중심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는 지역 동물단체의 제안으로 길고양이 화장실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2. 재건축·재개발

재개발은 건물 및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을 포괄적으로 정비 하는 것을, 재건축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한다.⁶⁾ 그동안 경기의 영향을 받아왔지만, 꾸준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2016년 기준,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762만 가구로 전체 1669만 가구 중 46%에 해당되며 서울은 약 37.4% 경기도는 29.8%가 이에 해당된다. 인구구조의 변동과 경제상황에 따라 규모와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비는 안전상으로도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후로도 계속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5)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 10년, 절반 가까이 감소... 올해도 9,700마리,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18.2.1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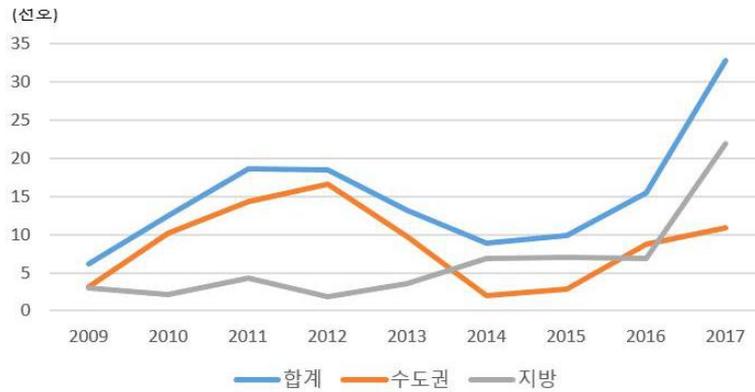


그림 1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실적

출처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을 하반기만 해도 서울 강남권에 한정해, 이주가 계획된 주요 재건축단지는 다음과 같다.

시기 (예상 포함)	지역	단지	가구수
7월	서초	신반포3차·경남	2196
	송파	미성·크로바	1350
8월	서초	반포우성	408
9월	서포	방배13구역	2977
10월	송파	진주	1507
12월	서초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2120
		한신4지구	2898

자료=각 구청·업계

그림 2 2018년 하반기 강남지역 이주 가구 수

출처 : 서울 강남권 재건축 1만3000가구 이주 시작... 전세금 오를까

조선일보 2018.7.14

1.3.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재건축·재개발은 세입자들의 주거권 문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등 인간사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이다. 재건축·재개발은 경관이 바뀌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계와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동식물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길고양이로서는 기존에 살던 서식처가 파괴되는, 일종의 재난 상황에 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이 기르던 고양이를 유기하고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들 고양이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숨어 지내다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

이런 길고양이를 보호하고자 그동안 서울시에서만도 잠원동, 개포동, 아현동, 둔촌동 등 기존에 해당지역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TNR과 구조, 이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어 왔다. 이런 활동에 호응해 재건축 시공사에서 길고양이 통로를 만드는 등 이외의 다양한 지역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활동들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에 설치된 길고양이 통로

출처 : 길고양이 커뮤니티 '고양이 발자국' 2017.11.11

재건축·재개발이 도시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해당지역에 남겨진 길고양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활동과 사례들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때론 동물단체나 자치구, 주위의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묻거나 도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례로 서울시 캣맘협의회에는 마포구 아현동과 동대문구 제기동 등 재개발지역 지역의 주민이 해당지역 길고양이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그동안 유기동물로서 보호조치 되던 길고양이를 TNR의 대상으로 바꾸어 보았다는 것은 해당 길고양이를 단지 포획해서 시간이 지나면 죽여 없애는 대상이 아닌, 길고양이 본연의 생태 즉, 주인이 없는 길 위의 존재로서의 삶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으로 길고양이에게 도시에서 함께하는 비인간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준 것이다.

이처럼 길고양이를 단지 개체 수 관리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본다면,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 자체가 공적 문제로 고려되듯, 길고양이 입장에서 서식처가 파괴되는 일 역시 공공이 관심을 가질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이 모든 활동을 지금까지처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만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이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활동을 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를 어떻게 보호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그동안의 사례들을 통해 노하우를 모으고 앞으로 있을 비슷한 상황에 대비해 어떤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지, 지역 주민·정부·동물단체 등 관련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II.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에 앞서

2.1. TNR과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돌봄

TNR에서 나아가 TNRM(management)은 이제 길고양이를 동네고양이로 변화시키고 있다. 중성화에서 끝나는 게 아닌, 해당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와 보살핌이 들어가는 것이다. 길고양이의 수명은 길어야 4~5년으로 보고되지만, TNR 이후 동네 주민들의 보살핌을 받는 길고양이는 수명이 8~9년 이상으로 늘어난 사례도 있다. 정부 정책의 비용대비 효과의 측면에서도 TNR을 한 고양이가 오래 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영역에서 다른 개체가 진입해 들어오거나 번식을 하는 것을 막는, 정책이 요구한대로 진공효과를 방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밥 주는 행위 또는 TNR 이후 동네고양이로서 주민들의 보살핌을 받아 인간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된 길고양이가 있다. 이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이 실시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길고양이로서는 한 순간에 생존 기반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돌봄을 멈춘다는 것은 관련 주민들에게 결코 용인되기 어려운 일이다. 이주는 결국 기존의 TNR에 따른 돌봄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로 봐야한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하는 게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돌보는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길고양이가 번식하거나 늘어난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지자체에선 이런 지역에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TNR을 실시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대책은 사실상 이 TNR이 전부인 상황이다. 이런 지역에 길고양이가 보인다고 밥을 주는 행위가 오히려 길고양이를 더욱 그 지역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현장의 규모와 맥락에 따른 심도 있는 관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가 시작되면 이런 고양이들이 실제로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건지, 그대로 그 안에 갇혀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펜스에 구멍을 뚫거나 출입이 가능하게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유인과 구조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기존의 경험과 사례,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활동과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될 만한 길고양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축적되어야한다. 도로나 건축물 등의 건조환경과 지역의 경관 형태에 따른 개체 밀도나 생활반경, 식생, 중성화 차이 등 한국 길고양이의 생태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2.2. 활동의 목표, 어디로 어떻게 이주시킬 것인가?

길고양이에게 현재 재건축·재개발 상황이 재난으로 판단된다면, 이제 그 길고양이들을 그곳으로부터 빠져 나오게 하는 것이 활동의 주목적이 된다. 그렇다면 일단 TNR을 통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개체수를 조절하며 이들 고양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동안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제시되는 방법은, 입양 외엔 크게 강제 이주와 점진적 이주로 나뉘 볼 수 있다.

강제 이주는 따로 이주 공간을 마련하여 포획 후 해당 공간에 방사하여 관리하는 모델이다. 한 순간에 서식처가 옮겨지는 것으로 인한 길고양이의 스트레스나 환경적응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주에 필요한 장소 마련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다만, 공사 시작까지의 시간이 얼마 없거나, 지자체나 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면 상황에 따라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강제 이주의 방법 중 하나로서, TNR 과정에서 포획 및 중성화 수술 후 방사 시 인근 지역에 놓아주는 방법도 고려되나 이 경우 상기한 문제와 더불어 본래 서식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점진적 이주는, 밥자리를 이동시켜 길고양이들이 자연스럽게 재건축·재개발지역에서 인접지역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이주에 앞서 인접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주 속도에 따라 길고양이들 끼리의 영역다툼 및 인접지역의 기존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주변에 산림이나 늪지 등 소동물이 다수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자연생태계가 있을 경우 해당지역의 생태계의 균형 역시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다.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기존 서식처와 비슷한 환경을 우선으로 하여, 해당지역 주민들과 길고양이 생태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천천히 밥자리의 이동을 통한 이주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닌 만큼 이 같은 방식의 길고양이 이주 역시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일이다.

2.3. 누가, 어떻게 이주시킬 것인가? 협의체의 구성

해당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천천히 이주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생긴다.

우선 현장의 규모가 고려되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조치만 취해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길고양이가 보다 적극적으로 먹이를 찾아 행동반경을 넓히고 서식지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지역 현황과 해당지역에 서식하

고 있는 길고양이 개체 수가 파악되어야 하며 구조나 입양, TNR이 필요한 개체를 판단해야 한다.

이들을 어느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인지, 주변에 생태보전지구 등 보호해야 하는 환경이 있는지, 인접 지역의 길고양이들은 TNR이 되어 있는지. 그 지역의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혹은 집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협력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현장 조사와 구조, TNR 시행,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다양한 사안에서 판단과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돌보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계자(조합, 시공사), 해당 지자체, 지원을 할 수 있는 동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협의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하는지 등을 논의해, 각각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고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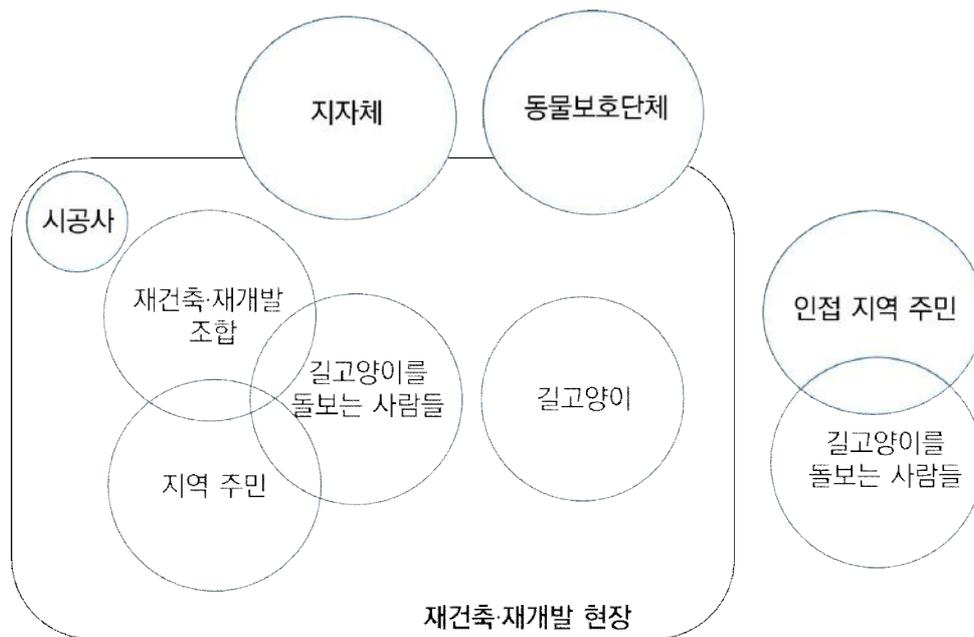


그림 4 재건축·재개발 길고양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가) 이주한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체는 해당지역에서 그동안 길고양이를 돌봐왔던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해당 주민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으로 보임

협의체 구성에 앞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해당 지역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 간에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들이 길고양이를 대변하는 단일한 행위자로서 먼저 구성 되는 것이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기 수월하고 앞으로 벌어질 다양한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이라는 사안 앞에 뜻 있는 주민들이 모여 행동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만일, 해당지역에 길고양이를 돌보는 가시적인 집단이나 개인이 없다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측에서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원자 모집 후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필요한 사항들 조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자체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행동 규율을 정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III. 제도적 지원 방안 고찰

3.1. 조례 제정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표 1을 통해 비교해볼 수 있듯, 동물 구조·보호와 동물 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동물보호의 주요 사항은 시·도지사의 업무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특별시인 서울시를 예로 들자면, 조례를 통해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업무 사항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물등록, 구조 및 보호,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실질적인 동물보호업무는 자치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구 자체적인 동물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업무의 근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1 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규와 내용

구분	동물보호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자치구 동물보호조례(구로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국가, 지자체, 국민의 책무 ·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 적절한 동물 사육 및 관리 · 동물학대 등의 금지: 살해·상해 · 체액채취·사행·영상물판매 · 동물의 운송 및 운송방법 · 동물의 도살 · 동물의 수술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 동물의 구조·보호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시설기준·국가의 설치운영비지원·위탁기관·위탁비용 지급·센터 운영위원회·센터 운영기준 등 · 유실·유기·배회·학대 신고 등 · 보호동물 공고·반환·보호비용 부담·소유권 취득 · 보호동물 분양기준·인도적 처리 등 · 출입검사 등 · 동물보호감시원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등록 등 수수료 ·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의무 · 동물복지계획 수립 ·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변경신고 등 ·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 감독 등 · 동물의 구조·보호 · 보호동물의 공고·반환 등 · 보호동물의 관리 · 피학대동물 보호·관리 · 소요경비의 징수 · 동물운송 및 인도적 도축 등 · 길고양이 관리 등 · 출입검사 등 ·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 동물보호업무에 대한 경비지원 등 · 등록수수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의 의무 · 동물복지계획 수립 ·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 감독 역할 등 · 보호동물의 관리·반환 · 피학대동물 보호·관리 · 동물운송 및 인도적 도축 등 · 반려동물 등 책임성 강화 교육·홍보 · 명예감시원 위촉 · 길고양이 관리 등 · 출입검사 등 ·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 동물보호업무에 대한 경비지원 등

출처 : 유기영,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201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서 길고양이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 9월 현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양천구 등 13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길고양이 관련 규정의 경우, 대부분 위의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나, 금천구나 마포구처럼 길고양이와 관련된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와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의 경우 길고양이의 관리 규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해두었다. 1항의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 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고, 법률과 시행령 등에서 따로 규율하지 않는, 임신 중이거나 월령 3개월 미만의 길고양이와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양천구 제13조 / 관악구 제19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2. 임신 중이거나 월령(月令) 3개월 미만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의 경우 기존의 조항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21조를 제정해 길고양이 급식소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제2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관리·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자치단체 조례 안에 길고양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항이 존재하며, 몇몇 자치단체는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더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 대상지의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조례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⁸⁾

1) 강동구의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조례 제21조처럼,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에 관리에

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있음

대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

제00조(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 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양천구와 관악구의 길고양이 관리 조를 모델로 삼아 제2항 제2호에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

제00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2.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에 대한 사항
3. 임신 중이거나 월령(月令) 3개월 미만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4.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3.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⁹⁾

재건축·재개발 길고양이 역시 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를 제거 또는 감소시킨다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일종의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규모는 도시개발사업(25만㎡이상) 정비사업(30만㎡이상)으로 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해 시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¹⁰⁾ 그 대상은 도시개발사업(7만5천~25만㎡), 재개발사업(9만~30만㎡). 건축물(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이 아닌 경우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¹¹⁾

9)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2호

10)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11) 서울시환경영향평가조례 제4조.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면적이 30만㎡ 이상인 626,232.5㎡로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고 개포주공2단지의 경우 사업면적이 9만㎡ 이상인 96,964.8㎡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었음

서울시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에 따르면¹²⁾ 건축물 및 재건축·재개발 대상 사업은 표 2의 중점 평가항목과 현황조사 항목을 가지며¹³⁾ 이 중 지금 논의되는 길고양이와 관련된 평가항목은 “동·식물”에 포함된다.

표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구 분	건축물 사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중점 평가 항목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물순환, 지하수)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물순환, 지하수)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현황 조사 항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미기상 포함)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미기상 포함) 인구·주거

출처 : 서울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동·식물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사항과 평가내용, 평가 기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서울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7) 동·식물

구 분	내 용
평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의 변화 옥외 공간 설계대안의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동·식물 영향 검토
평가내용	<p>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장축의 2배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면적에 대하여 실시 현황조사 이동경로, 조사기간을 제시하되 가능한 한 문헌조사 등을 포함하여 춘추계 및 하계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시행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식생도, 토지이용현황도, 도시생태현황도 제시 비오톱 유형을 확인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톱 유형에 대해서는 개별 비오톱 평가결과 확인 조사범위 내 서식이 확인된 생물종에 대한 분포현황도 작성 영향범위 내 법적 보호종(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천연기념물, 서울특별시 지정 보호 야생생물 등) 서식현황 분석 현황조사결과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로 나누어 표로 제시

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3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한편, 국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고시되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3) 서울시환경영향평가조례 제29조

-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동·식물 영향 검토**
- 기존 식생 보존대책 수립
 - 사업지구 내 기존 수목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제시
 -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 재활용 또는 폐기 등 선정기준 수립
 - 기존 수목 처리(보존)계획표 제시
 - 이식계획 수립 시 가이식장 위치 및 관리방안 등 제시
 - 이식 등 재활용 수목을 포함한 조경 식재계획 제시
 - 사업부지 내 및 주변에 비오톱 유형 1, 2등급지역이 인접하는 경우 사업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 유무 및 사업부지의 생물서식공간과 연계방안 검토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중 비오톱유형평가도상 비오톱 1, 2등급 지역 제시 - 훼손여부 및 관련 지침 검토 - 인접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검토 • 사업시행으로(공사) 인한 서식환경 악화가 영향범위 내의 기존 야생 동·식물 서식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가 기존 야생 동·식물 서식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대책 수립 • 현재의 동·식물 서식현황 대비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전·후 동·식물상 변화 비교표 제시 - 기존자료조사, 탐문조사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측·분석 - 현재의 동·식물상 및 서식환경 대비 사업시행에 따른 생물서식환경 및 동·식물상의 개선 정도 파악
	<p>③ 옥외 공간 설계대안의 생물다양성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공간 설계대안에 동물서식을 유도하기 위한 녹지 공간 조성 계획·설계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면적 변화, 식재계획도 등 제시 - 건물 벽면, 옹벽, 사면 등 벽면녹화가 가능한 지역 녹화 실시 • 생물서식공간 확보방안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증진대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녹화, 벽면녹화, 수공간 조성 등 비오톱 조성(옥상녹화의 경우 단일 식재 다양하고 생물다양성 고려) - 자생종 중심의 식재계획안 제시 - 연못(수공간) 및 유수환경 조성 등 각종 수생비오톱 조성 시 빗물을 이용하여 조성하는 방안 검토 - 생물다양성 증진대책 구체적 제시(도면, 목록 등) - 주변 공원, 하천, 산림 등과의 생태적 연계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검토 • 옥상녹화계획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녹화계획의 사용 수종 및 식재단면처리 계획 -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 인공지반 식재 토심은 1.2m 이상 확보하도록 하되 교목 식재 시의 식재 토심은 1.5m 이상 확보(인공지반의 식재 단면 제시)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증진 • 사업지구 내·외 녹지의 연결 • 비오톱 유형 1, 2등급 지역이 인접할 경우 인접 비오톱 유형 1, 2등급 지역과의 연계 • 사업지구 내 비오톱 유형 1, 2 등급이 있을 경우 등급별 대책 수립 • 비오톱 유형 평가등급과 개별 비오톱 평가등급이 모두 1등급인 토지는 절대 보전
평가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사업지구 장축의 2배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면적) • 주변지역에 공원, 하천, 산림 등 일정규모의 개방공간이 있을 경우, 주변지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일정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 해당 개방공간에 대한

출처 : 서울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주요 평가 사항은 첫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 둘째,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동·식물 영향 검토. 셋째, 옥외 공간 설계대안의 생물다양성 증진이며, 그 중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동·식물 영향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식생 보존대책 수립
- 사업부지 내 및 주변에 비오톱 유형 1, 2등급지역이 인접하는 경우 사업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 유무 및 사업부지의 생물서식공간과 연계방안 검토
- 사업시행으로(공사) 인한 서식환경 악화가 영향범위 내의 기존 야생 동·식물 서식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 검토
- 현재의 동·식물 서식현황 대비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의 변화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 조사를 통해 해당지역의 생물종을 파악하고 법적 보호종 서식현황을 분석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양이가 발견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고양이과라는 종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검토된다.

실제 개포주공2단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그림 5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표 4와 같이 사업시행 전·후의 동·식물상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라) 육상동물상

1) 포유류

가) 현지조사

- 2회의 현지조사시 사업지구 외곽 남측 산림지역에서 두더지와 고양이 2종만이 확인되었으며, 사업지구 내에서는 육상동물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음
- 본 조사지역은 대부분 도심지로 되어 있으며, 일부 산림이 분포하나 인위적인 간섭이 매우 심하여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림 5 포유류에 대한 조사 결과

출처 : 개포주공2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표 4 사업시행 전·후의 동·식물상 변화

동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내에서 조사된 동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유류 : 2과 2종 - 조류 : 11과 16종 323개체 - 양서·파충류 : 1과 1종 - 곤충류 : 9목 45과 99종 - 대부분 남측의 산림지역(대모산, 구룡산)에서 관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목, 아교목, 관목 및 지피류의 식재로 대모산, 구룡산, 개포근린공원, 달터공원, 양재천의 녹지축을 형성하여 일대에 서식하는 동물(조류 및 곤충류 등) 이입이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 : 참새, 붉은머리오목눈이, 썩새, 박새 등 - 곤충류 : 나비류, 장자리류 등
-----	--	---

출처 : 개포주공2단지 환경영향평가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그림 6과 같이 현지의 동물종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고 표 5와 같이 사업시행 후에도 동물상에는 변화가 없는, 즉, 현황과 동일한 소형동물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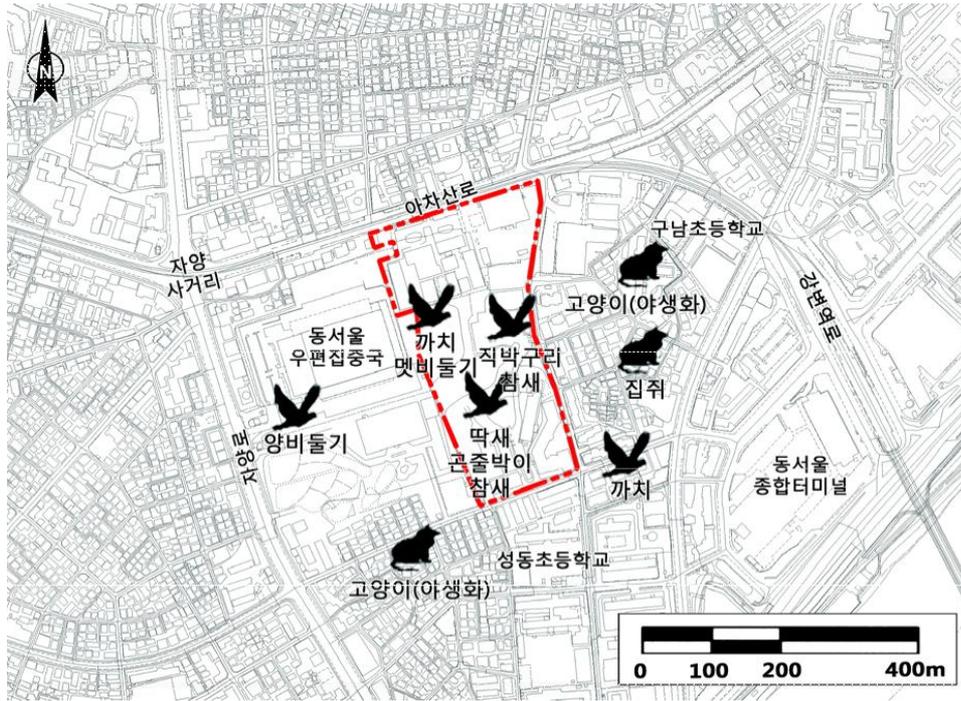


그림 6 조사지역의 동물상 분포도

출처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환경영향평가

표 5 사업시행 전·후의 동·식물상 영향 및 변화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개선안
식 물 상	식물상 및 식 생	- 조경수 → 감나무, 대추나무, 목련, 은행 나무, 주목 등 - 층위구조 및 식생상태 부족	- 녹지조성(옥상녹화 포함) → 소나무, 느티나무, 산수유 등 → 식재 수종 증가 → 체계적인 조경계획으로 인한 향상된 녹지공간 조성 및	녹지 계획 수립
	훼 수 목	- 수목량(사업지구) : 1,136(주)	- 훼손수목 발생 → 이식계획 수립	생물 다양성 증진
동 물 상	포유류	- 출현종 : 고양이, 집쥐 등	- 도시환경에 적응한 소형동물 유입 (현황과 동일)	-
	조 류	- 도시형 조류인 텃새류 우점 - 동물의 휴식 및 서식공간 부족 - 출현종 : 참새, 까치, 직박구리 등	- 녹지조성(옥생비오톱, 옥상녹화 포함)에 따른 서식환경 유지 - 출현(목표)종 : 참새, 곤줄박이, 박새 등	생태 공간 조성

출처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환경영향평가서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파악되는 해당 지역의 동물 생태는 개체가 아닌 주로 종이 기준임을 알 수 있다. 법적 보호종이 아닌 이상 개체 차원의 영향은 고려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길고양이 개체 하나하나와 유대관계를 맺고 있기에 종 차원의 문제가 곧 개체차원의 복지와 안전 문제이다.

한편, 수목의 경우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에서 그림 7에 제시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기존 식생의 보존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같은 재건축·재개발 부지가 품고 있는 나무와 식생의 가치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비록 이 중에서도 여러 기준을 통해 가치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보존 대책이 수립되지만 과거에는 식생 보존대책 항목이 보다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동·식물 영향 검토

- 기존 식생 보존대책 수립
 - 사업지구 내 기존 수목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제시
 -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 재활용 또는 폐기 등 선정기준 수립
 - 기존 수목 처리(보존)계획표 제시
 - 이식계획 수립 시 가이식장 위치 및 관리방안 등 제시
 - 이식 등 재활용 수목을 포함한 조경 식재계획 제시

그림 7 기존 식생에 대한 보존 대책 수립 기준

이와 같은 수준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을 바로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조항으로 하여금 앞서 제시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할 것과 활동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 그리고 해당지역 길고양이에 대한 TNR과 생태통로 마련, 사료 지원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것을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신설을 통해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는 이미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 시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가 기존 야생 동·식물 서식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대책 수립”이 라는 평가 내용을 통해서도 요구되고 담보될 수 있는 문제이다.

지자체가 다루는 사업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에 해당되는 국가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보다 동·식물 평가 내용이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대상도 더 많음에도 더 단순하게 평가되고 있는 점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신뢰성 회복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 여러 개선돼야 할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의 수목 계획을 참고해 국가 및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오래된 아파트단지가 품고 있는

숲과 평범한 동물 등 도시생태계에 전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동물상

(가) 동물상의 변화

- 사업지구는 기존 아파트 단지, 도로, 학교 등의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로수 및 공원 등의 인위적인 녹지대를 제외하고는 자연적인 식생공간이 출현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사업지구와 다소 크게 이격된 양재천과 구룡산 등의 산림을 제외하고는 생태적으로 주변과 단절된 상태로 생태적 지위가 높은 중·대형 동물이 서식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환경임
- 실제 공사가 실시되는 지역에는 중요종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일부 토목공정에 따른 중장비의 운용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은 주변 환경에 서식하는 육상동물에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공사완료후 사업지구내 육생 및 수생비오름 등 다층구조의 녹지공간 확보로 당초 인근 녹지지역에서 출현하는 조류(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곤충류(나비류, 잠자리류 등) 등을 사업지구 내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8 둔촌주공아파트 사업시행 전·후의 동·식물상 영향 및 변화

출처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IV. 나가며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에 대한 논의는 결국 길고양이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 맥을 같이한다. 활동과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제도가 마련되고,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은 곧 각각의 주체들이 갖고 있는 길고양이에 대한 상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길고양이와 같은 인간 외 존재를 우리 일상의 정치로 끌어오는 일은, 단순히 동물 애호의 차원이 아닌 결국 우리 정치와 사회를 생태화하는 참여와 변화의 움직임이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은 길고양이와 인간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이제는 나아가 길고양이를 대변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도 변지고 있다. 방법과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길고양이를 개인의 소유물로 보는 시각만큼은 지양해야한다. 길고양이를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함께하는 생태계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그 생존 과정에 관여한 만큼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싶다.

폭염이 휩쓸고 간 이번 여름, 길 위의 생명들 역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겨울엔 또 유례없는 혹한이 예고되어 있어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는 길고양이들의 생존이 더욱 우려된다. 비단 길고양이 뿐만이 아니다.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여러 다른 존재들이 고통 받는 것이 현실이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많은 분들이, 길고양이에서 출발해 주변과 지구 환경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인식의 확장을 경험한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돌본다는 것의 힘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다.